

# 학술연구비운영규정

제정 2007. 3. 1  
개정 2008.11.10  
개정 2009. 6. 8  
개정 2011. 3.21  
개정 2011.11. 1  
개정 2013.10. 1  
개정 2018.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을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문 발전과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학술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3.21)

**제2조(지급대상)** ① 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1.11.1)

1. 본교에 재직하는 전임교원 이상의 교원
2. (삭제 2011.3.21)
3. 본교의 외래강사 혹은 중요한 연구업적이 있는 인사로서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 중 교무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1.10, 2011.11.1)

1. 최근 5년간 교내·외 연구비 수혜자로서 연구비 지급 중지 또는 회수된 자와 연구결과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평정을 받아 연구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 혹은 예정인 자
3. 기타 본교 관련 규정에서 제한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제3조(연구비의 종류)** ① 본교에 재직하는 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개정 2011.3.21, 2018.3.1)

1. 신진연구비 : 신진교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강화를 위해 지급되는 연구비 (개정 2011.3.21)
2. 일반연구비 : 교내 연구집단 육성 및 연구·개발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 (개정 2011.3.21)

② 정책과제연구비 : 본교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구비 (개정 2011.3.21)

③ 특별연구비 : 그 외 총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 (개정 2011.3.21)

**제4조(연구비의 신청)**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연구비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술연구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1)

1. 학술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연구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3. <삭제>

4.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학술연구비 지급대상 추천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개정 2008.11.10)

**제5조(연구계획서의 심사)** ① 연구비 지급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교내·외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연구계획서의 심사를 의뢰한다.

② 심사위원은 관련분야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심사위원은 각 연구계획서를 별지 제6호 서식 연구계획서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5호 서식 연구계획서 심사결과표에 따라 심사결과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개정 2008.11.10)

**제6조(연구비의 지급요건 및 방법)** ① 위원회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친 후 70점 이상의 판정을 받은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것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08.11.10)

② 연구비는 일시불 또는 분할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연구비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학술연구비 실행예산서, 별지 제4호 서식의 학술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0)

**제7조(연구비 수령자의 의무)** 연구비 수령자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연구비의 수령 : 연구비 지급 결정을 통고 받은 해당 연구자는 연구비 지급 총액이 신청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당초의 연구계획을 진행할 것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연구비의 사용 : 연구비는 그 지급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계획의 변경 :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학술연구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중간보고서 제출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④ 연구 중간보고 : 연구자는 연구기간의 중간일에 별지 제7호 서식의 학술연구 중간보고서에 의하여 연구진행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결과 보고 :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연구종료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술연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1.3.21)

⑥ 연구비 결산보고 : 위원장은 연구종료 시 연구비 수령자에게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연구자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논문 별쇄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에 한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논문 제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⑧ 신진연구비와 일반 및 교외조성 연구비(1천만원 이하)는 SCI급 논문(SCI, SCIE,

SSCI, SCOPUS, A&HCI, EI 등재 국제학술지) 1편 이상 게재하고, 일반 및 교외조성 연구비(500만원 이하)는 KCI급 논문(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지 또는 등재 후보지) 1편 이상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논문 투고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와 특별연구과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1.10, 2011.3.21, 2011.11.1, 2018.3.1)

⑨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연구비 수혜자는 연구기간 동안 총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1.3.21)

**제8조(벌칙)** ① 연구자가 제7조 및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연구비의 지급을 일시정지·취소 및 지급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② 연구자에게 부과한 벌칙은 그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1주일이 경과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그 이행을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연구결과보고)** ① 연구책임자는 제7조제8항에 의거하여 연구결과 논문을 국제학술지 및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학회지 또는 등재 후보지에 게재하고 별쇄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1, 2011.11.1, 2018.3.1)

② 연구결과에 대한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2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학술연구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이 규정의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위원회를 구성·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주관부서의 직원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6.8, 2011.3.2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관리·의결한다.

1. 연구비 신청의 접수 및 심사위원 선정
2. 연구 계획의 승인과 연구진행 과정의 관리
3. (삭제 2011.3.21)
4. 연구비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
5. 연구비 지급정지·취소 및 환수 등에 관한 제반 사항
6. 기타 이 규정 관련 제반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1.3.21)

② 위원회의 모든 의결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연구결과의 출판)**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성과물에는 “이 논문(저서, 예술연구)은 00학년도 을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국문), This paper was supported by Eulji University in 20??(영문)”이라고 명기한다. (개정 2008.11.10, 2011.3.21)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 연구 계획서

1. 연구제목

- 국문 :
- 영문 :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3.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4. 연구내용 및 방법(상세히 기술)

4-1. 연구내용 및 방법

4-2. 연구참여인력 및 분담표

▷ 연구책임자 및 공동(협동)연구자

번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분담내용	참여기간	참여율 (%)
	소 속	직 위	성 명			

▷ 연구보조원

번호	연구보조원			연구보조내용	참여기간	참여율 (%)
	소 속	직 위	성 명			

5. 연구 결과의 기대효과

6. 향후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관련 연구의 향후 수행 계획)

7. 참고문헌

8. 연구진행계획서 (다년간 연구과제일 때는 연차별로 각각 별지에 작성)

연구기간 연구내용	년								년				비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해당 월에 “○”표로 진행계획을 기술

9. 소요예산(다년간 연구과제는 연차별로 각각 별지에 작성)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비 고
<b>1. 인건비 소계</b>			참여율 반영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b>2. 직접비 소계</b>			
- 연구장비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b>3. 간접비(O/H)</b>			
<b>합계(1+2+3)</b>			

10.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활용

11. 다년간 연구가 필요한 이유(다년간 연구인 경우)

12. 연구기기 및 시설 활용 방안

주요기기 및 시설명	보유현황		기기 및 시설 소재지	없을 시의 대책
	유	무		

13. 기타사항

[별지 제3호 서식]

## 학술연구비 실행예산서

### 1. 연구과제

관 리 번 호		연구분야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총 연구비	원정		

※ 관리번호는 기재하지 마시오.

### 2. 연구비실행예산내역

항 목	실행예산액	산 출 내 역	비 고
1. 인건비 소계			
- 외부인건비			
- 학생인건비			
2. 직접비 소계			
- 연구장비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과제추진비			
3. 간접비(신진 및 일반)		총 연구비(1+2+3)의 10%	대학간접비 계좌로입금
합계(1+2+3)			

※ 산출근거는 품명, 수량, 금액 등 구체적 근거 기입

위와 같이 20      학년도 학술연구비 실행예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을지대학교 총장 귀하





(심사위원장)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연구계획서 심사표

(연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연구제목) :

영역	세 부 사 항	판 정	합계
연구 계획서 (60점)	1. 연구계획의 창의성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점
	2. 연구목적의 필요성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3. 연구방법의 타당성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4. 연구 추진 계획의 효율성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5. 예상결과의 기대효과 및 발전성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6. 향후 관련 연구의 수행계획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연구비 신청서 (30점)	7. 신청양식의 적합성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점
	8. 예산편성의 적절성	① 우수(20점) ② 양호(16점) ③ 보통(12점) ④ 미흡 (8점) ⑤ 불량 (4점) <u>점수(점)</u>	
연구수 행능력 (10점)	9. 연구 수행 능력	① 우수(10점) ② 양호(8점) ③ 보통(6점) ④ 미흡 (4점) ⑤ 불량(2점) <u>점수(점)</u>	점
합 계	점		

첨부 : 연구계획서 심사의견서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 학술연구 중간보고서

책 구 입	연 소 속	공 연 소 속	직 위	성 명
	구 직 위	구 직 위	직 위	성 명
	자 성 명	자 성 명	직 위	성 명
연 구 과 제 명	국 문			
연 구 과 제 명	영 문			
연 구 진 행 상 황 요 약	*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도율 및 참고 자료는 별도작성 첨부할 것.			
연구진행 중간결론	* 별지 내용과 같음			
연구계획 변경상황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연구비 총액	금	원정	기수령액	금
				원정

학년도 학술연구비에 의한 연구과제 중간진행 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인)

을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 학술연구비 지급대상자 추천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교의 학술연구비 운영규정 제2조 제3호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교 학 처 장



[별지 제11호 서식]

## 학술연구 계획변경 신청서

		결재	담당	팀장	처장	총장
연구과제명				관리번호		
소속			직위		성명	
변경사항	기존 연구계획					
	변경계획					
변경사유						
경비내역						
<p>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신청인 : (인)</p> <p><b>을 지 대 학 교 총 장 귀하</b></p>						

[별지 제12호 서식]

##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 1. 연구 책임자

#### 가.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재직기관	주 소 : Tel : <span style="float: right;">Fax :</span> e-mail :				
	자택	주 소 : Tel : <span style="float: right;">Fax :</span> e-mail :				

#### 나. 학 력

구 분	기 간	학 교 명 (대학교, 단과대, 학과)	전 공	취득국가
학 사 석 사 박 사				
최종학위 논문명				
최종학위 취득일자		지도교수	소속 : 직위 :	성명 :

다. 경 력(최근 경력부터 기재)

기 간	근 무 기 관 명	직급 및 직위

라. 최근 4년간 연구실적

1) 연구실적 통계 (최근 연도부터 기재)

구분 연도	전문학술지			학술 회의 참석	특 허			기 타
	국내	국외	소계		출원	등록	소계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계								

2) 전문학술지 논문실적 (게재 또는 게재승인으로 구분함)

연도	논문제목	*구분	학술지명	저자순위	저자수 (참여인원)

\*구분 선택 : 국외 학술지, 국내저명학회 학술지, 국내분과학회 학술지, 국내저명대학학회 학술지

3) 학술회의 Proceeding 게재 논문실적(게재 또는 게재승인으로 구분함)

가) .....

나) .....

다) .....

.  
.
   
.

4) 특허실적

- 출원

가) .....

나) .....

다) .....

.  
.

- 등록

가) .....

나) .....

다) .....

.  
.
   
.

5) 기타 (연구보고서, 저서, 기술자문 등 기타 연구실적, 수상실적, 학술지 편집활동 등 학술 경력사항 등에 대하여 기술함)

가) .....

나) .....

다) .....

.

.

6) 상기 실적 중 신청자가 판단하는 주요 연구실적물에 관한 요약문 5개 이내로 첨부함.

7) 연구실적이 저조한 경우 이에 대한 사유 설명

## 2. 공동연구원 (갑)

### 가. 인적사항

성명	한글		한자	
소속	대학(교)			학과
주민등록번호	-	직위		전공

### 나. 주요경력

기간	기관	직위 및 직책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 다. 주요학력

기간	학교	전공	학위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라. 연구업적 (최근 4년간)

항목 구분	제 목	잡 지 명 (출판사명)	발표연도 (출판연도)
논 문			
저 서			
학회발표			

※ 공동연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는 (갑), (을), (병) 등의 기호를 붙여 별지에 동일 양식 (가, 나, 다 항)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십시오.

### 3. 연구보조원

성명	소속	전공	직위	주민등록번호	비고

### 4. 역할구분

[별지 제13호 서식]

## 기자재 활용방안

주요 기기 및 시설명	보유현황		기기 및 시설 소재지	없을 시의 대책
	유	무		